



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 시 보

www.namwon.go.kr

<b>선 람</b>	기관장

제7호      2016. 2. 05(금)

## 조 례

- 남원시 조례 제 2016-14 호 남원시 작은 목욕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 남원시 조례 제 2016-14 호 남원시 주민소득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 고 시

- 남원시 고시 제 2016 - 19 호 남원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계획수립)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29
- 남원시 고시 제 2016-17 호 남원시 군도(4호선 및 6호선)도로 노선의 변경 고시 .....32

## 공 고

- 남원시 공고 제 2016 - 165 호 도로지정공고 ..... 33
- 남원시 공고 제 2016 - 167 호 2016년 01월 수시분 지방소득세 고지서 공시송달 ..... 34
- 남원시 공고 제 2016 - 172 호 201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면허분 공시송달 ..... 36

<b>회 람</b>										
----------------	--	--	--	--	--	--	--	--	--	--

※ 발행 : 남원시 / 편집 : 홍보전산과 ☎(063)620-6032

## 남원시 작은목욕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	--

제출연월일 : 2016. 1. .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농 정 과 장

### 1. 개정이유

작은 목욕탕 이용료의 현실화와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작은 목욕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이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나. 운영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다. 별표 목욕탕 이용 요금표 삭제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 나. 그 밖의 사항
  - 1) 입법예고
    - 기 간: 2016. 1. . ~ 2016. 2. (20일간)
    - 결 과:
  - 2) 비용추계서: 별첨
  -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 의뢰 중

남원시 조례 제2016-14호

## 남원시 작은 목욕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작은 목욕탕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호 중 “사람에 대하여”를 “사람에게”로 한다.

제5조 제2항 중 “휴무예정일로부터”를 “휴무예정일 부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6조 제1항 중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의”를 “이용하려는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이용료는 1,000원 이상 4,000원 이하의 범위에서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시장이 결정한다.

제7조 중 “당해연도”를 “해당 연도”으로 한다.

제8조 제1항 중 “교부하여야”를 “내주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비치하고”를 “갖추어 두고”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람에 대하여”를 “사람에게”로 한다.

제11조 제2항 중 “구성한다”를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호선한다”를 “호선(互選)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를 “중에서”로 한다.

제12조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목욕탕 이용요금의 조정에 관한 사항

제13조 제1항 본문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번만”으로 한다.

제15조 제2항 중 “때와”를 “경우와”로 하고, “있는 때에”를 “있을 경우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재적위원”을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으로 한다.

제17조 제1항 중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을 “운영하려는 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일할 계산”을 “일할계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시에서”를 “시장이”로 한다.

제18조 제1항 중 “선정하고자”를 “선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을 “선정 할 경우에는 위탁 기간”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교부하여야”를 “발급하여야”로 한다.

제1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수탁자는 수탁 운영하는 시설을 관리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하며, 관리하는 재산은 목욕탕 운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을 증축·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변조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설이용료 등 수익금은 목욕탕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조례 및 위탁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

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위반한 때”를 “위반한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위반한 때”를 “위반한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발생한 때”를 “발생한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해지하려는”으로 한다.

제21조 중 “등 개별법상의”를 “에 따른”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또는 과실로 인하여”를 “또는 과실로”로, “상당”을 “상응”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주의로 인하여”를 “부주의로”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대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5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별표 “목욕탕 이용 요금표”는 삭제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제3조(정의) ----- -----. 1. (현행과 같음)

2. "이용료"란 목욕탕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4. (생략)

제5조(개장시간) ① (생략)

② 운영자는 시설 보수 및 정비를 위하여 휴무할 경우 휴무예정일로부터 10일 전까지 목욕탕 이용 대상자들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③ 운영자는 목욕탕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이용료 징수 등) ① 목욕탕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② (생략)

③·④ (생략)

제7조(운영비의 예산반영) 시장

2. -----  
사람에게 -----  
-----.

3.·4. (현행과 같음)

제5조(개장시간) ① (현행과 같음)

② -----  
----- 휴무예정일  
부터 -----  
-----  
-----.

③ -----  
----- 경우에는 -----  
-----  
-----.

제6조(이용료 징수 등) ① -----  
-- 이용하려는 사람은 -----  
-----.

② 이용료는 1,000원 이상 4,000원 이하의 범위에서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시장이 결정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④·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제7조(운영비의 예산반영) -----

은 매년 목욕탕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되, 운영비는 당 해연도 이용료 예상 수입금 이 내로 한다.

제8조(입욕권의 교부 등) ① 운영자는 이용료를 납부한 사람에게 입욕권을 교부하여야 하며, 입욕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운영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입욕권 수불부를 비치하고 입욕권 수불 및 이용료 납부 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9조(이용하는 사람의 금지)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

- 1. ~ 3. (생략)

제11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생략)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읍·면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

-----  
----- 해당연도-----  
-----.

제8조(입욕권의 교부 등) ① -----  
-----  
----- 내주어야 -----  
-----.

② -----  
----- 갖추어 두고 -----  
-----  
-----.

제9조(이용하는 사람의 금지) ---  
-----  
----- 사람에게-----  
-----.

- 1. ~ 3. (현행과 같음)

제11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한다.

③ -----  
----- 호선(互選)

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 4. (생략)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 3. (생략)

<신설>

4. (생략)

제13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생략)

제15조(회의) ① (생략)

②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위원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한다.

④ -----  
----- 중에서 -----  
-----.

1. ~ 4. (현행과 같음)

제12조(위원회의 기능) -----  
-----  
-.

1. ~ 3. (현행과 같음)

4. 목욕탕 이용요금의 조정  
에 관한 사항

5. (현행 제4호와 같음)

제13조(위원의 임기) ① -----  
----- 한 번만 -----  
-----.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  
-----  
----- 경우와 -----  
----- 있을 경우에 -----  
-----.

③ ----- 위원장을 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위탁운영) ① 제4조에 따라 목욕탕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위탁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④ 납부한 위탁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의 사정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일할 계산한 금액으로 반환한다.

⑤ 목욕탕의 운영비는 수탁자 부담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목욕탕 개·보수에 따른 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제18조(수탁자 선정) ①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탁운영 신청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② 연속 위탁 시에는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연속 위탁 여부를 결

함한 재적위원 -----  
-----.

제17조(위탁운영) ① -----  
----- 운영하려는  
자는 -----  
-----.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  
----- 일  
할계산-----.

⑤ -----  
-----.  
-----  
-- 시장이 -----.

제18조(수탁자 선정) ① -----  
----- 선정 -----  
-----  
-----.

② -----  
-----  
-----

정하되,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 만료 3개월 전까지 선정하여야 한다.

③ 결정된 수탁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목욕탕의 위탁 관리 및 운영 결정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9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수탁 운영하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관리하는 재산은 목욕탕 운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변조할 때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설이용료 등 수익금은 목욕탕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 선정 할 경우에는 위탁 기간 -----  
-----.

③ -----  
-----  
----- 발급하여야 -----.

제19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수탁 운영하는 시설을 관리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관리하는 재산은 목욕탕 운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삭 제>

<삭 제>

<삭 제>

한다.

4. 수탁자는 목욕탕 운영에 따른 안전사고의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제반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5.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조례 및 위탁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제20조(위탁계약 해지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계약조건을 위

<삭 제>

<삭 제>

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을 증축·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변조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설이용료 등 수익금은 목욕탕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조례 및 위탁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0조(위탁계약 해지 등) ① -----  
-----  
----- 경우에는 -----  
-----.

1. ----- 위

반한 때

2. 수탁자가 제19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21조(안전관리) 운영자는 목욕탕을 관리할 때 「전기사업법」, 「소방기본법」 등 개별 법상의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용하는 사람의 상해에 대비하여 상해보험 및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2조(손해배상 등) ① 운영자는 목욕탕을 이용하는 사람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목욕탕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훼손 또는 잃어버렸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도록 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위탁재산의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수탁자가 원

반한 경우

2. ----- 위반한 경우

3. ----- 발생한 경우

② -----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해지하려는 -----.

제21조(안전관리) -----  
-----  
-----에 따른-----  
-----  
-----.

제22조(손해배상 등) ① -----  
----- 또는 과실로 -----  
-----  
-----  
----- 상응 -----.

② ----- 부주의로 -----  
-----  
-----

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3조(지도감독) ① (생략)

② 시장은 제1항에 대한 지도 점검결과 바로잡아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남원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23조(지도감독) ① (현행과 같음)

② ----- 따른 -----  
-----  
-----.

제24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5조(시행규칙) ----- 시행에 -----  
-----.

## 남원시 작은 목욕탕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 비용발생요인

- 작은 목욕탕 운영에 필요한 경비

#### ○ 관련조문

- 「남원시 작은 목욕탕 운영조례」 제6조(이용료 징수)

### 2. 비용 추계결과

#### ○ 연간예산 : 33백만원(운봉 18, 산내 15)

- 공공요금 : 30.6백만원(전기, 수도요금 등 운봉 16.8, 산내 13.8)
- 수 용 비 : 2.4백만원(운봉 1.2, 산내 1.2)

#### ○ 연도별 예산

- 2016년 : 33백만원(운봉읍, 산내면 작은 목욕탕 운영비)
- 2017년 : 33백만원(운봉읍, 산내면 작은 목욕탕 운영비)
- 2018년 : 33백만원(운봉읍, 산내면 작은 목욕탕 운영비)
- 2019년 : 33백만원(운봉읍, 산내면 작은 목욕탕 운영비)
- 2020년 : 33백만원(운봉읍, 산내면 작은 목욕탕 운영비)

### 3. 재원 조달 방안

#### 1. 재원조달계획 : 연33백만원/2개소(이용료 33)

#### 2. 연도별 재원조달계획

- 2016년 : 자체수입금 33백만원(이용료 및 기타수입)
- 2017년 : 자체수입금 33백만원(이용료 및 기타수입)
- 2018년 : 자체수입금 33백만원(이용료 및 기타수입)
- 2019년 : 자체수입금 33백만원(이용료 및 기타수입)
- 2020년 : 자체수입금 33백만원(이용료 및 기타수입)

### 4. 그 밖의 사항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6년)	2차년도 (2017년)	3차년도 (2018년)	4차년도 (2019년)	5차년도 (2020년)	계
세 입		33	33	33	33	33	165
자체수입(이용료)		33	33	33	33	33	165
자체수입(기타수입)							0
세 출		33	33	33	33	33	165
운영비(공공요금 등)		33	33	33	33	33	165
재원 조달		33	33	33	33	33	165
의존 재원	소 계						
	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시비						
자체 수입	소 계	33	33	33	33	33	165
	지방세						
	세외수입						
	이용료수입	33	33	33	33	33	165
	기타수입						0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 의견제출서

1. 의견제출 목록		남원시 작은목욕탕 운영조례 일부개정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6년    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

**남원시장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남원시 주민소득사업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16. 1. .  
 제출자 : 남원시장  
 제안설명자 : 농정과장

### 1. 개정이유

주민소득사업 용자한도액을 상향 조정하여 농축산업의 전업화, 규모화를 통한 농업경쟁력강화와 소득기금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용자조건의 용자한도액 조정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2항)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 「농어업 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6. 1. 30. ~ 2016. 2. 18.(20일간)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붙임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 의뢰 중

## 남원시 주민소득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주민소득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한다.

제4조 제1항 중 “구성한다”를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쪽의 성별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연임”을 “한 차례만 연임”으로 한다.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중 “신청인과”를 “신청인과”로, “있었던”을 “있었던”으로 한다.

제5조 제2항 중 “수당을”을 “「남원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로 한다.

제6조 제1호 나목 중 “유우”를 “육우”로 한다.

제7조 제2항 본문 중 “5천만원, 세대는 2천만원”을 “8천만원, 세대는 4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얻어”를 “받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3년이내”를 “3년 이내”로 한다.

제8조 제1항 중 “받고자 하는”을 “받으려는”으로 한다.

제9조 제3항 중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을 “소속공무원에게”로 한다.

제10조 제2항 중 “용자금에 대하여는”을 “용자금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때에는 수탁금융기관으로 하여금”을 “경우에는 수탁 금융기관이”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인정할”을 “인정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수탁금융기관”을 “수탁 금융기관”으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부진할 때”를 “부진할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인정될 때”를 “인정될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사용하였을 때”를 “사용하였을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4. 타지역으로 진출하였을 경우

제14조 중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얻어”를 “받아”로 한다.

제1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얻어”를 “받아”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부족할 때”를 “부족할 경우”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감독)”을 “(지도·감독)”으로 하고, 제15조제1항 중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을 “관계공무원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응하여야”를 “따라야”로 한다.

제19조 중 “특별회계를 운용하는 데”를 이”로, “일반회계”를 “일반회계의”로 한다.

제20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u>정의</u>는 다음과 같다.</p> <p>1. ~ 5. (생략)</p> <p>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u>구성한다.</u></p> <p>②·③ (생략)</p> <p>④제3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사람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사람의 임기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2년으로 하되 <u>연임</u>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p> <p>⑤·⑥ (생략)</p> <p>제4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p>	<p>제2조(정의) ----- ----- <u>뜻은</u> ----- -. 1. ~ 5. (현행과 같음)</p> <p>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 ----- - <u>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쪽의 성별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u></p> <p>②·③ (현행과 같음)</p> <p>④----- ----- ----- ----- ----- ----- ----- <u>한 차례</u> <u>만 연임</u>-----. -----.</p> <p>⑤·⑥ (현행과 같음)</p> <p>제4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p>

는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생략)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신청인 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 던 경우

3. 4. (생략)

②·③ (생략)

제5조(간사 및 수당) ① (생략)

②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용자대상사업) 용자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생산소득사업

가. (생략)

나. 축산 : 한우, 유우, 돼지, 닭, 염소, 사슴, 꿀벌 등

다·라. (생략)

2. ~ 8. (생략)

제7조(용자 조건) ① (생략)

-----  
-----  
-----.

1. (현행과 같음)

2. ----- 신청인 과 -----  
있었던 -----

3. 4.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5조(간사 및 수당) ① (현행과 같음)

②-----  
-----  
----- 「남원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

제6조(용자대상사업) -----  
-----  
-----.

1. -----

가. (현행과 같음)

나. ----- 유우-----  
-----

다·라. (현행과 같음)

2. ~ 8. (현행과 같음)

제7조(용자 조건) ① (현행과 같음)

②용자한도액은 법인 및 생산자 조직은 5천만원, 세대는 2천만원까지로 한다. 다만, 사업의 성질상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남원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어 용자 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③용자기간은 2년 거치 3년이내로 한다.

④ (생략)

제8조(용자 신청) ①용자를 받고 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용자 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읍·면·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9조(용자대상자의 선정 및 통보) ①·② (생략)

③시장은 용자대상자를 선정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사항을 조사·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용자금의 상환) ① (생

음)

②-----  
----- 8천만원, 세대는 4천만원-----.

③----- 3년 이내-----.

④ (현행과 같음)

제8조(용자 신청) ①----- 받으려는 -----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용자대상자의 선정 및 통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소속공무원에게 -----

제10조(용자금의 상환) ① (현행

략)

②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용자금에 대하여는 제7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 수탁금융기관의 일반대출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③시장은 용자금을 대출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담보 물건을 설정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생략)

제11조(용자금 상환기간 연장) ①시장은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연장할 수 있다.

③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상환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연장이 필요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한 만료일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014.6.27.>

④시장은 상환기간 연장이 결정

과 같음)

②-----  
-- 용자금은 -----  
-----  
-----.

③-----  
----- 경우에는 수  
탁 금융기관이 -----  
-----.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용자금 상환기간 연장) ①-----  
-----  
----- 인정될 -----  
-----.

②-----  
----- 한 차례만 -----  
-----.

③ -----  
-----  
-----  
-----  
----- <후단 삭제>

④-----

되면 즉시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와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용자금의 반환) 시장은 용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상환기한 만료일 전이라도 용자금 잔액의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사업추진 실적이 극히 부진할 때
2. 해당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용자금을 사업목적 이외로 사용하였을 때
4. 타지역으로 전출하였을 때

제14조(감면조치) 시장은 용자받은 자와 연대보증인 모두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이자 또는 상환의무를 감면할 수 있다.

-----  
- 수탁 금융기관-----  
----.

제12조(용자금의 반환) -----  
-----  
----- 경우에는 -----  
-----  
-----  
-----  
-----.

1. ----- 부진  
할 경우
2. -----  
----- 인  
정될 경우
3. -----  
사용하였을 경우
4. 타지역으로 전출하였을 경우

제14조(감면조치) -----  
-----  
-----  
-----  
-----  
----- 경우에는 -----  
받아 -----  
-----.



제14조의2(2004년 이전 용자지원  
금의 특별감면) 수탁금융기관과  
지정협약을 체결하기 이전 제9  
조에 따라 지원된 용자금이 연  
체되어 누적됨으로써 용자금 상  
환이 어려운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각 호와 같은  
경우에 그 상환의무를 감면할  
수 있다.

1. 이 자금을 용자받은 자가 용  
자금의 이자가 누적되어 상환  
능력이 부족할 때 그 연체이  
자를 감면함으로써 경영정상  
화 및 상환이 가능하다고 위  
원회에서 판단하는 경우

2. (생략)

제15조(감독) ①시장은 관계공무  
원으로 하여금 자금을 용자받은  
자에 대하여 사업 추진상황을  
지도 감독하게 할 수 있고, 수탁  
금융기관의 자금관리 상태를 확  
인하게 할 수 있다.

②수탁금융기관의 장은 주민소  
득사업 운영상황을 매 회계연도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  
며, 시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의2(2004년 이전 용자지원  
금의 특별감면) -----  
-----  
-----  
-----  
----- 경우에는 -----  
----- 받아 -----  
-----  
-----.

1. -----  
-----  
----- 부족할 경우 -----  
-----  
-----

2. (현행과 같음)

제15조(지도·감독) ①-----  
관계공무원이 -----  
-----  
-----  
-----  
-----.

②-----  
-----  
-----  
-----  
----- 따라야 -----.

# 시 보

제19조(준용) 특별회계를 운용하  
는 데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  
 한 사항은 일반회계 예에 따른  
 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제19조(준용) 이 -----  
 -----  
 ----- 일반회계의 -----  
 ----.

제20조(시행규칙) ----- 시행  
에 -----  
 -----.

남원시 주민소득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발생요인

- 농업·농촌의 발전과 농업인소득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함

○ 관련조문

- 농업인 소득보전(안 제7조)

2. 비용 추계결과

○ 연간예산 : 1,000백만원(2016년 기준)

- 인력육성 및 경영개선 : 1,000백만원

○ 연도별 예산

- 2016년 : 1,000백만원      - 2017년 : 1,000백만원
- 2018년 : 1,000백만원      - 2019년 : 1,000백만원
- 2020년 : 1,000백만원

3. 재원 조달 방안

- 2016년 : 1,000백만원(기금 1,000)
- 2017년 : 1,000백만원(기금 1,000)
- 2018년 : 1,000백만원(기금 1,000)
- 2019년 : 1,000백만원(기금 1,000)
- 2020년 : 1,000백만원(기금 1,000)

4. 그 밖의 사항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6년)	2차년도 (2017년)	3차년도 (2018년)	4차년도 (2019년)	5차년도 (2020년)	계
세 입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5,000,000
용 자 금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5,000,000
세 출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5,000,000
소득사업 용자금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5,000,000
재원 조달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5,000,000
의존재원	계						
	국비						
	도비						
	시비						
자체수입	계						
	지방세						
	세외수입						
	입장료수입						
	기타수입						
지방채							
기 금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5,000,000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 의견제출서

1. 의견제출 목록		남원시 주민소득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6년    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

**남원시장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남원시 고시 제2016 - 19호

## 남원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계획수립)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남원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계획수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하고 관련도서를 남원시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남 원 시 장

2016년 2월 5일

### 1. 남원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계획수립)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m <sup>2</sup>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 경	변경후		
신설	34	지리산 헬스뷰티타운 지구단위계획구역	남원시 운봉읍 동천리 388번지 일원	-	증)25,858	25,858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적(m <sup>2</sup> )	결정사유
신설	34	지리산 헬스뷰티타운 지구단위계획구역	남원시 운봉읍 동천리 388번지 일원	25,858	“지리산 헬스뷰티타운 조성사업”의 추진을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함.

나.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 해당없음
-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 해당없음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가 구		획 지			비 고
가구번호	면 적(m <sup>2</sup> )	획지번호	위 치	면 적(m <sup>2</sup> )	
1	25,498	①	남원시 운봉읍 동천리 388번지 일원	7,284	
		②	남원시 운봉읍 동천리 388번지 일원	4,123	
		③	남원시 운봉읍 동천리 388번지 일원	14,091	

○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가구	획지					
1	①	운봉읍 동천리 388번지 일원	용 도	허용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li> <li>-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li> <li>-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골프연습장, 사무소, 노래연습장</li> <li>-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전시장</li> <li>-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li> <li>- 제15호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및 그 시설 안의 위락시설</li> </ul>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20% 이하		
			용적률	• 100% 이하		
			높이(층수)	• 건축물 4층 이하		
			배치·형태	• 조망향을 고려하여 배치		
			색채	•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색채		
			건축선	• 남원시 건축 조례 [별표4] 1m 이상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가구	획지					
②		운봉읍 동천리 388번지 일원	용 도	허용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li> <li>-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미용원, 목욕장, 의원, 한의원</li> <li>-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사무소</li> <li>-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li> <li>- 제15호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및 그 시설 안의 위락시설</li> </ul>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20% 이하		
			용적률	• 100% 이하		
			높이(층수)	• 건축물 4층 이하		
			배치·형태	• 조망향을 고려하여 배치		
			색채	•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색채		
			건축선	• 남원시 건축 조례 [별표4] 1m 이상		
③		운봉읍 동천리 388번지 일원	용 도	허용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li> <li>- 제2호 공동주택 중 기숙사</li> <li>-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미용원</li> <li>-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사무소, 직업훈련소</li> <li>-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li> </ul>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20% 이하		
			용적률	• 100% 이하		
			높이(층수)	• 건축물 4층 이하		
			배치·형태	• 조망향을 고려하여 배치		
			색채	•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색채		
			건축선	• 남원시 건축 조례 [별표4] 1m 이상		

다.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계획수립)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도면 : 실음생략



## 도로 노선의 지정 변경 폐지 고시

남원시 고시 제2016-17호

[ ] 제19조제1항 또는 제20조제4항  
 도로법 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 제21조제3항

도로 노선을 다음과 같이  지정  
 변경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폐지

2016년 2월 5일

남원시장

직인

구분	[ ] 지정 [√] 기존	[ ] 폐지 [√] 변경
도로의 종류	군도	군도
	군도	군도
노선번호	4	4
	6	6
노선명	웅정 ~ 장국	귀석 ~ 장국
	지당 ~ 고평	중동 ~ 고평
기점	남원시 금지면 웅정리 1353-1도 남원시 주생면 지당리 723도	남원시 금지면 귀석리 718-4천 남원시 주생면 중동리 1-3도
종점	남원시 송동면 장국리 274 남원시 수지면 고평리 1006	남원시 송동면 장국리 274 남원시 수지면 고평리 1006
주요 통과지	송동면 두신리	송동면 두신리
	송동면 흑송리	송동면 흑송리
총연장 (킬로미터)	8,200m	13,384m
	7,800m	10,908m
다른 도로 노선과 중복되는 구간	구간	
	연장 (킬로미터)	

◎ 남원시 공고 제 2016 - 165호

## 도 로 공 고

건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신고)시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02월 05일

## 남 원 시 장

○ 도로지정 공고내역

지정 번호	대 지 위 치	건축주 성 명	허가(협의) 및 신고번호	도로 길이 (m)	도로 너비 (m)	도로 면적 (㎡)	이해관계인		
							지 번	편입면적 (㎡)	토지소유자
2016-3	남원시 운봉읍 준향리 산73-1	고*민	2016-건축과- 신축신고-35	75.5	6	453	남 원 시 운 봉 읍 준 향 리 산 73-1	290	고*민
							남 원 시 운 봉 읍 준 향 리 산 73-3	163	고*민

남원시 공고 제2016 - 167

## 공 시 송 달 공 고

2016년 01월 수시분 지방소득세 고지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02. 05

남 원 시 장

- 1. 제 목 : 2016년 01월 수시분 지방소득세 고지서 공시송달
- 2. 공고기간 : 2016. 02. 05. ~ 2016. 02. 19.
- 3. 납부기한 : 2016. 02 29
- 4. 공시송달내용

2016년 01월 수시분 지방소득세 고지서를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으로 반송되어 이를 공시송달하오며, 공시송달기간이 도래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고지서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5. 공시송달내역 : 붙임

## 2016년 01월 수시분 지방소득세 고지서 공시송달 내역

(단위:원)

납세자	납세자 번호	과 세 번 호	세액	송달사유	간주납기
권*남	77****-*****	140004-2016-01-**-***-57	1,600	수취인 불명	2016.02.29
청*영농 *합*인	21****-*****	140003-2016-01-**-***-14	1,566,850	수취인 불명	2016.02.29
청*영농 *합*인	21****-*****	140003-2016-01-**-***-15	458,220	수취인 불명	2016.02.29
청*영농 *합*인	21****-*****	140003-2016-01-**-***-16	391,150	수취인 불명	2016.02.29
청*영농 *합*인	21****-*****	140003-2016-01-**-***-17	791,920	수취인 불명	2016.02.29

남원시 공고 제2016 - 172

## 공 시 송 달 공 고

2016년 0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면허분 고지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02. 05

남 원 시 장

- 1. 제 목 : 201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면허분 고지서 공시송달
- 2. 공고기간 : 2016. 02. 05. ~ 2016. 02. 19.
- 3. 납부기한 : 2016. 02. 29.
- 4. 공시송달내용

2016년 0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면허분 고지서를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으로 반송되어 이를 공시송달하오며, 공시송달기간 이 도래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고지서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5. 공시송달내역 : 붙임

## 201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면허분 공시송달 내역

(단위:원)

납세번호	납세자번호	개인(법인)명	본세	공고사유	간주납기
114001 2016 01 1 250 *****	480823-*****	유**협	9000	주소불명	20160229
114001 2016 01 1 250 *****	591003-*****	이**재	9000	주소불명	20160229
114001 2016 01 1 250 *****	112180-*****	전**이**양**대**파**산**중**	9000	주소불명	20160229
114001 2016 01 1 250 *****	631018-*****	기**옥	9000	주소불명	20160229
114001 2016 01 1 250 *****	590930-*****	이**숙	9000	주소불명	20160229
114001 2016 01 1 310 *****	211371-*****	백**대**농**산**영**조**법**	12000	이사감	20160229
114001 2016 01 1 310 *****	204414-*****	유**회**한**건**	9000	주소불명	20160229
114001 2016 01 1 310 *****	204614-*****	유**회**용**산**	9000	이사감	20160229
114001 2016 01 1 310 *****	211311-*****	정**산**	9000	주소불명	20160229
114001 2016 01 1 320 *****	134811-*****	남**에**지	27000	주소불명	20160229
114001 2016 01 1 340 *****	550317-*****	노**택	9000	주소불명	20160229
114001 2016 01 1 350 *****	211311-*****	풍**몰**시**트**업	9000	이사감	20160229
114001 2016 01 1 350 *****	211311-*****	(주)서**콘**리**	18000	이사감	20160229
114001 2016 01 1 360 *****	200111-*****	건**팜**	9000	이사감	20160229
114001 2016 01 1 370 *****	211311-*****	태**레**콘	12000	이사감	20160229
114001 2016 01 1 370 *****	211311-*****	유**산**	9000	이사감	20160229
114001 2016 01 1 390 *****	511002-*****	박**만	9000	이사감	20160229
114001 2016 01 1 400 *****	211314-*****	유**회**금**물**	12000	이사감	20160229
114001 2016 01 1 420 *****	211311-*****	주**타**탄**어	27000	주소불명	20160229
114001 2016 01 1 420 *****	770703-*****	권**남	12000	주소불명	20160229
114001 2016 01 1 450 *****	551226-*****	양**희	27000	주소불명	20160229
114001 2016 01 1 450 *****	551226-*****	양**희	27000	주소불명	20160229
114001 2016 01 1 460 *****	211371-*****	영**조**법**지**산**내**러**	12000	주소불명	20160229
114001 2016 01 1 460 *****	211371-*****	영**조**법**지**산**내**러**	9000	주소불명	20160229
114001 2016 01 1 460 *****	491104-*****	소**남	9000	이사감	20160229
114001 2016 01 1 470 *****	211311-*****	세**환**엔**니**링	9000	이사감	20160229
114001 2016 01 1 520 *****	211371-*****	지**산**은**춘**골**농**합**인	15000	주소불명	20160229
114001 2016 01 1 520 *****	210114-*****	유**회**신**토**	15000	이사감	20160229
114001 2016 01 1 520 *****	780219-*****	박**선	22500	이사감	20160229
114001 2016 01 1 520 *****	211314-*****	유**회**남**넷	15000	이사감	20160229
114001 2016 01 1 520 *****	211311-*****	주**회**성**	15000	이사감	20160229
114001 2016 01 1 540 *****	910314-*****	강**구	22500	주소불명	20160229
114001 2016 01 1 540 *****	581228-*****	서**만	15000	주소불명	20160229

114001	2016	01	1	550	*****	600422-*****	허**봉	15000	이사감	20160229
114001	2016	01	1	550	*****	760110-*****	양**기	15000	주소불명	20160229
114001	2016	01	1	550	*****	211314-*****	농**회**법**참**	22500	주소불명	20160229
114001	2016	01	1	560	*****	510212-*****	최**길	15000	이사감	20160229
114001	2016	01	1	570	*****	211311-*****	파**데**	15000	주소불명	20160229
114001	2016	01	1	570	*****	110111-*****	선**애**	15000	주소불명	20160229
114001	2016	01	1	570	*****	200111-*****	일**종**건**	45000	이사감	20160229
114001	2016	01	1	570	*****	210114-*****	대**건**	30000	이사감	20160229
114001	2016	01	1	570	*****	211314-*****	영**건**	30000	이사감	20160229
114001	2016	01	1	570	*****	701201-*****	강**호	15000	이사감	20160229
114001	2016	01	1	570	*****	154511-*****	지**이**이**텍	45000	이사감	20160229
114001	2016	01	1	570	*****	701201-*****	강**호	15000	이사감	20160229
114001	2016	01	1	570	*****	690317-*****	유**현	15000	주소불명	20160229
114001	2016	01	1	570	*****	211314-*****	대**물**	45000	이사감	20160229
114001	2016	01	1	590	*****	540405-*****	정**화	22500	이사감	20160229
114001	2016	01	1	590	*****	211371-*****	지**산**브**드**농**합**인	22500	이사감	20160229
114001	2016	01	1	590	*****	211371-*****	지**산**브**드**농**합**인	22500	이사감	20160229
114001	2016	01	1	590	*****	211371-*****	지**산**브**드**농**합**인	22500	이사감	20160229
114001	2016	01	1	590	*****	211371-*****	지**산**브**드**농**합**인	15000	이사감	20160229
114001	2016	01	1	590	*****	691125-*****	김**식	15000	이사감	20160229
114001	2016	01	1	590	*****	691125-*****	김**식	15000	이사감	20160229
114001	2016	01	1	590	*****	211314-*****	대**건**	45000	이사감	20160229
114001	2016	01	1	590	*****	214814-*****	조**건**유**회**	15000	이사감	20160229
114001	2016	01	1	590	*****	740727-*****	강**희	22500	주소불명	20160229
114001	2016	01	1	590	*****	211311-*****	주**회**장**	30000	이사감	20160229
114001	2016	01	1	590	*****	124411-*****	청**건**	30000	이사감	20160229
114001	2016	01	1	590	*****	211314-*****	유**회**만**산**	45000	주소불명	20160229
114001	2016	01	1	590	*****	141311-*****	제**에**건**산** **식**사	15000	이사감	20160229
114001	2016	01	1	590	*****	211311-*****	농**회**법**주**회**남**허**	22500	이사감	20160229
114001	2016	01	1	590	*****	214814-*****	성**건**유**회**	30000	이사감	20160229
114001	2016	01	1	590	*****	211314-*****	유**회**신**	15000	이사감	20160229
114001	2016	01	1	590	*****	560225-*****	김**례	15000	주소불명	20160229
114001	2016	01	1	590	*****	035154-*****	남**에**다**아**회	15000	주소불명	20160229